

원활한 기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방안

2021. 06. 16.

윤 병 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Table of Contents

- I. 연구 목적
- II. 승계기업 현황과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 III. 해외 상속세 제도
- IV. 기업승계 상속세 당면 현안
- V. 상속세 정책 제언
- VI. 결론

원활한 기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방안



I. 연구목적

1. 연구목적

-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가족기업 상속 시 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율이 높음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경영 의지를 꺾고 불확실성을 높이므로 경영활동 제약 요인이 됨
 -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 분할, 일감몰아주기 거래 등 비조세비용 발생 가능(윤태화, 박종성과 이영한, 2020)
 -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승계 애로사항 중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78.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산업통상자원부, 2020.2.11.; 송병철 전문위원, 2020.11.)
-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는 한국의 대주주에 대한 높은 상속세 누진세율을 고려하면, 기업 오너에게는 기업 상속보다 사모펀드(PEF)가 더 유리한 대안으로 부각된다고 분석(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으로 우량 장수기업이 사모펀드나 비관련 업종기업에 기업매각 사례가 다수 발생(한국경영자총협회, 2018)
 - 사모펀드에 의해 매각된 경우 경영성과가 양호하지 않음
 - 사모펀드 투자기업의 영업성과(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증가율) 모두 하락(구자현, 2015)

1. 연구목적

□ 최근 상속세제 개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기업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및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및 상향입법을 홍석준(대표발의)등 11명(2020.6.11.발의(의안번호 2100362)), 홍석준(대표발의)등 11명(2020.7.30.발의(의안번호 2102536)), 이영(대표발의)등 13명(2020.6.12.발의(의안번호 2100402)), 김용판(대표발의)등 15명(2020.9.9.발의(의안번호 2103677)), 권성동(대표발의)등 10명(2020.9.16.발의(의안번호 2103945))

○ 주요 개정안을 정리하면

- 기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 제2항)
-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폐지함(안 제18조제6항).
-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함(안 제71조제2항제2호 신설).

1. 연구목적

- 상속세제를 개편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시급
 - 기술력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장기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 현안인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선방안을 제언함

원활한 기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방안

II. 승계기업 현황과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2-1. 기업상속공제 요건 충족기업-----	7
2-2. 상속세 기업부담 비율-----	8
2-3. 상속세가 기업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9
2-4. 기업상속공제 건수와 공제금액-----	10
2-5. 상속세 면제 후 납세 기여도-----	12

2-1. 기업상속공제 요건 충족기업

- 우리나라 경영자(CEO)가 창업자인 51,256개 회사를 기준(조봉현, 2021)으로 한 기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기업은 27.2%에 불과

<표 1> 기업승계 지원제도 요건별 충족기업

(단위: 개사, %)

요건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초과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피상속인 10년 경영	68,244	69.9	66,824	69.6	1,420	93.3
중견매출, 중소자산	97,288	99.7	95,978	99.9	1,310	86.1
업종	87,698	89.9	86,460	90.0	1,238	81.3
최대주주 지분	70,053	71.8	69,051	71.9	1,002	65.8
상속인 가업종사	39,850	40.8	39,421	41.0	429	28.2

주)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기업상속공제 지원 가능

자료: 조봉현(2021), p.16.

<표 2> 기업승계 지원제도 필수요건 충족 기업 비율

(단위: 개사, %)

요건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초과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모든 요건 충족	26,602	27.2	26,315	27.4	287	18.8

자료: 조봉현(2021), p.16.

2-2. 상속세 기업부담 비율

- 기업상속자산 중 3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 유출
 -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46.9%가 상속세
- 일생을 바친 기업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

<표 3> 상속세 기업부담비율

(단위: 개사, %)

구분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초과
기업상속세(a)	11.7	10.4	186.6
기업상속자산(b)	33.2	30.5	397.4
비율(a/b)	35.2	34.1	46.9

자료: 조봉현(2021), p.19.

2-3. 상속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매각 시 경영권 유지 곤란
 -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80%
- 우량기업일수록 세대교체 시마다 경영권 분쟁 발생 가능

<표 4> 상속세가 기업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초과
납부 후 가족 지분율	50% 이상 기업 비율	81.4	81.9	19.9
	50% 미만 기업 비율	18.6	18.1	80.1

주 1) 납부 후 가족 지분율=[상속세/(1주당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발행주식수)]

2) 납부 후 가족 지분율은 기업별 추산임

자료: 조봉현(2021), p.19.

2-4. 기업상속세공제 건수와 공제금액

- 최근 5년(2015~2019)간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 활용 건수는 평균 85건으로 독일(평균 1.1만건)의 1%, 영국(2,594건)의 3.3%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금액(평균 2,365억원)은 독일(평균 6.4조원)의 3.7%, 영국(2.7조원)의 8.8%에 불과(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 건수는 연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공제금액도 연평균 2,365억원에 불과하나, 독일의 2015~2019년간 활용건수는 연평균 1만건이 넘고, 금액도 연평균 47.8억유로(한화 약 6.4조원)에 달함.

<표 5> 한국과 독일의 기업상속시 공제 활용 실적 비교

(단위: 건, 억원, 백만유로)

구 분	공제건수		공제금액	
	한국	독일	한국	독일
2015	67	11,085	1,706	4,753
2016	76	11,885	3,184	5,208
2017	91	10,747	2,226	6,881
2018	103	10,311	2,344	4,029
2019	88	11,368	2,363	3,047
5년 평균	85	11,079	2,365	4,784

자료: [韓]국세청, 국세통계연보; [獨]통계청,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한국경영자총협회(2021)

2-4. 기업상속세공제 건수와 공제금액

- 영국의 기업자산 공제는 5년간(2014~2018) 평균 2,594건, 연간 2.7조원(18.7억파운드)에 달함

<표 6> 한국과 영국의 상속세 기업자산 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 실적

(단위: 건, 억파운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공제건수	2,640	2,610	2,190	2,200	3,330	2,594
공제금액	19.9	22.9	16.0	12.5	22.2	18.7

주) 해당 연도는 직전연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까지 기준임. 2018년 연평균 환율 1,468.22 원/파운드 기준
자료: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2020.7), Inheritance Tax Returns.

2-5. 기업상속세 납세 후 납세기여도

-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상속세수는 1.7조원 감소하나 기업 매출액이 52조원(6.8%), 법인세수는 6,816억원(3.8%), 일자리는 1,770명(3.0%) 증가(한국경제연구원, 2019.2.20.)

- 상속인이 상속세 감면으로 생긴 여유재원을 신규사업 개발 등에 투자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표 7> 상속세 부담 완화가 20년간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

구분	기업상속공제 대상 현수준 유지(3천억 미만)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1조원 이하)	증가 효과	증가율
매출액	775조	828조	52조	6.8%
법인세	17.9조	18.6조	6,816억	3.8%
고용량	58,681명	60,451명	1,770명	3.0%

주)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시 상속세 부담 완화가 20년간 기업경영에 미치는 누적 경영성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19.2.20.).

원활한 기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방안

III. 해외 상속세 제도

3-1. 일본-----	14
3-2. 독일-----	15
3-3. OECD-----	16
3-4. 해외 주요국의 정책적 시사점-----	18

3-1. 일본

-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자 기업승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장점보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추문갑, 2018)
- 중소기업의 기능승계 현황과 승계방안을 제시(日本政策金融公庫, 2020)
 - ‘기능’은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을 말하고 ‘기술’은 객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구분
-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률: 신사업승계제도 시행(2018년 4월부터)

<표 8> 일본의 중소기업 승계지원제도

구분	주요내용
감세 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증여·상속 세금유예, 감면 대상 주식을 종전 3분의 2에서 전채로 확대하고 납세유예 대상 주식 수 상한을 없애며, 매각 시 세금 감면
면세 규정 확대	손자까지 상속하거나 도산 등 불가피한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사후조건 완화	상속·증여 후 5년 간 80% 고용유지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고용조건을 못 지키는 경우에도 유예 가능
공동상속 확대	1명만 허용하던 상속인을 3명까지 인정

자료: 정육 특파원(2018. 10. 09.)

3-2. 독일

- 독일은 1997년부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및 평가법의 개혁에 관한 법률」을 2009.1.1.부터 시행
- 기업상속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
 - 임대·투자자산 등 관리자산(비사업용 자산)이 50% 이상인 기업은 제외하고 비사업용 자산이 10% 이상인 기업은 85%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보다 사후관리 요건 등이 엄격하지 않음
 - 피상속인 및 조합원의 총지분을 25% 이상(한국 일반 50%, 상장 30%)이어야 하고 가업상속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85% 또는 100%이며, 그 한도는 없음
 - 사후관리기간은 5년(85% 공제), 7년(100% 공제)이고, 그 기간 동안 기업재산, 지분 및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3-3. OECD

- OECD 16개국 실증분석(1965~2013) 결과, 높은 상속세는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의 경제성장을 늦추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원윤희, 성한경과 송헌재, 2020)
 -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

<표 8> OECD 국가의 상속세 과세현황

구분		국가
상속세 부과 (23개국)	상속세 면제 ¹ (4개국)	스위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부과 (19개국)	한국 ² ,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칠레,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자본이득세 부과 (상속세 폐지연도) (2개국)		캐나다(1972), 호주(1979)
상속세 과세않는 국가 (상속세 폐지연도) (11개국)		이스라엘(1981), 뉴질랜드(1992), 포르투갈(2004), 슬로바키아(2004), 멕시코(2005), 오스트리아(2008), 노르웨이(2014), 체코(2014), 스웨덴(2005), 에스토니아(미시행), 라트비아(미시행)

주 1) 스위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등 4국가는 상속세 면제, 증여세 부과함.

2) OECD 회원국은 2020년 9월 현재 3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가입.

3) OECD 비회원국으로 상속세 없는 국가(13개국):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홍콩, 파키스탄, 쿠웨이트, 우루과이, 요르단

자료: EY 한영(2020),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KPMG(2020), International,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3-3. OECD

- 2021년 5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은 37개국. 2018년 OECD에 가입한 콜롬비아 제외시 회원국 36개국
-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 (2020년 기준)(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표 9> OECD 국가의 상속세 과세현황

구분	공제상한	사전요건		사후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한국	-중소기업(자산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영위기간 별 공제한도는 업력 10년 이상: 200억 원, 업력 20년 이상: 300억 원, 업력 30년 이상: 500억 원(상증법 §18 ②)	-최대 20년의 연부연납 특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 100분의 3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보유 * (대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경영, 대표이사 재직(아래 택1) ① 기업영위기간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 재직 ②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을 승계하여 상속시까지 계속 재직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기업상속 이전 2년이상 종사, 18세이상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상속세 신고 후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가업: 7년, 영농: 5년) 이내 대표이사 유지 *기업용 자산 7년 이내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통계법」 제22조) *7년간 80%(5년간 90%) 상속받은 주식지분 유지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기준총급여액) 평균의 80% 이상 유지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기준고용인원) 평균의 80% 이상 유지 *탈세 또는 회계부정 금지 *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기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과 해당 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추징 환수(5년 미만 100%, 5~7년 80%)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일본·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제상한 없음 -독일 2017년 상한 신설: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은 75만 유로를 감소, 최대 공제가능자산 9천만유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기업규모 상한 제한 없음. 즉, 모든 기업 -영국: 전문직 또는 천직으로 운영, 상속직전 중요소업자산을 2년이상 보유 -독일: 85% 공제시 비사업용 자산 50% 이하, 100% 공제시 비사업용자산 10% 이하/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은 체감적 공제 또는 필요성 심사절차후 감면 -일본: 비상장 중소기업,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 50% 초과 보유 -프랑스: 제조업(공업, 수공업), 상업, 농업, 자영업의 업종제한 있으며, 2년이상 지분 보유 -이탈리아: 이탈리아 소재 기업 주식(의결권)의 50%이상 보유 -네덜란드: 상속 전 1년이상 주식 보유 및 경영	-일본: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내 대표 취임, 특수관계인 그룹 내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초과 보유	-영국: 사후관리 요건 없음 -독일: ①85% 공제요건-사업승계 이후 5년이상 기업 및 고용유지(인원수가 아닌 급여총액 기준으로 5년간 급여총액이 상속연도 대비 400%이상) ②100% 공제요건-사업승계 이후 7년이상 기업 및 고용유지(인원수가 아닌 급여총액 기준으로 7년간 급여총액이 상속연도 대비 700% 이상) *단, 종업원 5인이하 급여총액 유지의무 면제 *지분매각은 상속재산 평가기준 기업가치 30%까지 허용(상속증여 2년전부터 상속증여 이후 20년까지) -일본: 상속 이후 5개월 내 대표이사 취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속받은 지분 유지, 근로자수80%이상 5년간 유지(탄력 적용 가능) -프랑스: 상속 이후 4년간 면세 적용받은 지분 유지, 3년 이상 기업 운영, 매년 요건 입증 -이탈리아: 상속 이후 5년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하면서 이와 관련한 신고서가 발행되면 면제 -네덜란드: 상속 이후 5년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시 공제

3-4. 해외 주요국의 정책적 시사점

- 장수기업이 많은 OECD 주요국은 과도한 세금 문제가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업승계 시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거나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
-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상속세 부담과 까다로운 기업상속공제 요건이 있음
 -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때는 대출
 - 승계보다 매각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
-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고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 고려
 -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낮춰 장수기업이 원활히 기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원활한 기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방안

IV. 기업승계 상속세 당면 현안

- 4-1. 공제대상, 공제상한, 업종변경 범위-----20
- 4-2. 기업승계 세제 공제요건 엄격-----23
- 4-3. 실효세율 감소효과 없음-----25
- 4-4. 중소기업 이외 최대주주 주식할증-----27

4-1. 공제대상, 공제상한, 업종변경 범위

◆ 공제대상

- 장수기업이 우리나라는 특정 중소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개시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한정
- 2018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 매출 3천억 원까지 공제가 능하도록 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업력 10년 이상 200억 원, 업력 20년 이상 300억 원, 업력 30년 이상 500억 원을 공제
 - 법령 규정 요건에 부합하면 현재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을 상속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음
- OECD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폴란드는 기업 규모별 공제제한이 없으며, 독일은 일정 자산(2,600만 유로) 이상 기업도 체감적 공제 또는 필요성 심사 후 세금 감면 적용 선택 가능

4-1. 공제대상, 공제상한, 업종변경 범위

◆ 공제상한

- 장수기업이 1997년 1억 원에서 현재 기업 영위 기간별로 500억 원까지 상향되었으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15년/20년(2014년)에서 10년/20년/30년(2018년)으로 축소되어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일관성 상실
- 업력 20년 이상 영위 기업의 공제한도 변화를 보면 2014년 증액되었다가 2018년 축소돼 사실상 공제한도의 축소
-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고 기업 영속성과 근로자 고용안정 측면에서 기업상속공제제도 요건 강화는 부정적 영향

4-1. 공제대상, 공제상한, 업종변경 범위

◆ 업종변경 범위

- 기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 요건(상증령 §15⑧)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
 - 예를 들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업)이 밀가루 제조를 할 때만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기준을 중분류로 넓히면 제빵업(소분류: 기타 식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2. 기업승계 세제 공제요건 엄격

- 기업을 후세대에게 물려줄 때 적용되는 기업상속공제제도는 사전 및 사후 요건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움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500개사) 조사 결과, 기업상속공제 활용 의향에 대해 66.2%가 유보적이라고 응답. 제도 활용계획이 없는 이유로 사전요건 충족이 어려워(40%),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로 나타나 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주저(중소기업중앙회, 2020)
-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국경영자총협회, 2018.10.)

<표 11> 우리나라 기업승계 세제 공제요건

구 분	상속세 요건
상속세 감면 위한 절차	사전승인제
개인·법인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법인의株式이 적용대상
기업규모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매출 3천억 원 미만)(상증법 §18②)
상속업종	제조업, 건설업 등 영위 개인·법인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통계법」 제22조)(상증령 §15⑪))

4-2. 기업승계 세제 공제요건 엄격

구 분		상속세 요건
피상속인 상속인 사전요건	기업 영위기간	7년 이상 계속 개인·법인 기업경영(상증법 §18⑥)
	최대주주 지분	비상장법인 지분율 50%(상장법인 30%) 이상, 5년 이상 계속 보유(상증령 §68③)
	피상속인	피상속인 거주자, 최대주주 1인
		피상속인 나이제한 없음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에 종사
		대표이사 등으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경영(아래 택1)(상증령 §68③) ①기업영위기간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②5년 이상의 기간,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상속인: 18세 이상 거주자
		상속인의 배우자: 18세 이상 거주자
	단독승계/취임	공동상속 허용
		신고기간 내 대표이사 등 임원 취임
		신고기간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상증령 §68③)
	기업종사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통계법」 제22조)
		1년이상 가업 휴업·폐업등 금지
사후요건	기업용자산 유지	7년간 80%(5년간 90%) 유지(상증법 §18⑥)(상증령 §15⑤)
	지분유지	기업용 자산 7년 이내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총급여액과 고용인원 유지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기준총급여액) 평균의 80% 이상 유지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기준고용인원) 평균의 80% 이상 유지
	책임경영	탈세 또는 회계부정 금지
	요건위반 과세추징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 추정 환수 (5년 미만 100%, 5~7년 80%)
		위반기간에 따라 추정세액 계산
	연부연납 특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상증법 §71(연부연납)②1)

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4-3. 실효세율 감소 효과 없음

- 과세표준액 대비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실효세율,
실효세율=최종결정세액(상속세 실납부액)/과세표준×100의 경우
- 국가별 상속세 실효세율 비교(2017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 28.09%, 미국 23.86%, 독일 21.58%, 일본 12.95%로서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가장 높음(국회예산정책처, 2019).
 -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26.8%(2014)→30.1%(2015)→29.4%(2016)→28.1%(2017)로서 연도별 세율 감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오윤환, 김은아와 박찬수, 2020).
- 일본은 2018년 4월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시행하면서 상속세 감세대상 확대, 사후요건 완화 같은 조치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

4-3. 실효세율 감소 효과 없음

-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속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여 상속인 및 수증자의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세는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 탈루, 비과세·감면제도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 과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날 조세제도와 기술의 발달로 소득세 과세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송병철 전문위원, 2020.11.)

4-4. 중소기업 이외 최대주주 주식할증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 것은 2000년부터 인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클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임(송병철 전문위원, 2020.11.)
- OECD 국가 중 일률적으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 미국과 일본은 할증평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매우 제한하여 적용
 - 미국의 지배주주 보유주식 할증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에도 일률적인 계산 공식은 존재하지 않음(안경봉과 홍순기, 2013)
 - 일본은 거래를 통해 사후적으로 측정된 가치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하며, 할증 금액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은 없음(한만수, 세법상 주식 등의 평가원칙과 지배주식 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연구, 2009)
 - 미국과 일본 모두 할증 뿐만 아니라 할인 평가 가능(박명호, 김태훈과 기은선, 2008)
-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할증평가에 따른 비(非)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원활한 기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방안

V. 상속세 정책 제언

- 5-1. 기업승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29
- 5-2. 기업승계 다각화 검토-----30
- 5-3.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조건 완화-----31

5-1. 기업승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기업승계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있으나 기업승계 없이는 지속가능한 회사가 존립할 수 없으므로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
- 기업승계자는 비가족경영자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Cadbury, 2000; Perez-Gonzalez, 2006)

- 거시경제에 긍정적. 세대중복모형에서도 나타남(최명근과 조경엽, 2006; 조경엽, 2015; 라정주, 2017)

<표 12> 혁신친화형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구분	전환 방향		주요 내용
인식 전환	기업승계 → 제2의 창업		기업승계를 ‘제2의 창업’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제도 확대	세울논쟁 → 신규투자 유도, 실질적 혜택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승계 다각화	친족 승계	공익 재단	재단 기반의 기업승계로 선순환의 혁신생태계 구축
		제3자 승계	친족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로 제3자 승계 등 다각화

자료: 오윤환, 김은아와 박찬수(2020.9.23.)

5-2. 기업승계 다각화 검토

- 중소기업의 후계자 선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기업승계를 기업의 '축적된 기술·노하우의 대물림'으로 볼 때 제3자 승계 등 승계 다각화의 필요성을 의미
- 후계자 없는 기업의 승계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3자 승계가 주목받고 있으나 후보자 탐색과정이 길고,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
 - 제3자 승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
(오윤환, 김은아와 박찬수, 2020.9.23.)

5-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한 및 조건완화

1)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과 기업상속공제 확대

-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6%를 고려하여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함
 - 독일(2016년 법 개정)은 상속세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임동원, 2017)
 - 우리나라도 세금 관련 유동성 문제로 기업 존속 등이 위협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 기업을 승계할 때 기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함
 - 기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 매출 3천억원까지 공제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 기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업력 10년 이상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업력 20년 이상 3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업력 30년 이상 500억원에서 1000억원, 업력 45년 이상(신설) 1500억원을 공제해야

5-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한 및 조건완화

2)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미래를 위한 기반 투자 촉진
(오윤환, 김은아와 박찬수, 2020.9.23.)
 - 업력 20년 초과 성숙기업은 업력 20년 미만 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이석훈, 2019)
 - CEO가 고령일수록 R&D투자에 보수적(하영범과 이성희, 2014)
 - 기업승계 전후 기업의 단기적 고용 및 재무성과 악화 경향은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 유동성 및 경쟁력 저하 때문(홍성철 외, 2011)
- 창업주는 높은 상속세율로 경영을 중단하거나 사모펀드에 팔아 현금으로 환원하여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경향(나광국 기자, 2019.5.20.)
 - 투자액 공제 도입으로 기업승계 전후 시점의 일시적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규 연구개발투자 및 성장을 기피하는 경향을 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을 기업승계 공제제도에 적용하여 연구개발투자액을 추가 세액공제(tax credit)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투자한 비용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

5-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한 및 조건완화

3) 사전요건: 최대주주 지분 완화

- 피상속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상장법인 지분율 50%(상장법인 30%) 이상, 5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함(상증령 §68③)
-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현재 비상장법인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비상장법인 30%(상장법인 15%) 이상으로 낮춰야 함

<표 13> 상장 중소기업 지분율 기준(최대주주 등 지분율 30% 미만) 미충족 기업

코스피		코스닥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3개 / 230개	23.0%	249개 / 670개	37.2%

주) 분석대상: 기업별 최신결산 기준 매출액 3천억원·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규모 대기업·판단 제외기업, 지분율 정보 없는 기업 제외.

자료: 중소기업단체협의회(2020).

5-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한 및 조건완화

4) 사후요건: 업종 변경 자율화와 상속세 납부 후 사후관리 기준완화

- 상속세의 기업업종은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면서 「통계법」 제22조에 의한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상증령 §15⑪)
 - 하지만 업종변경을 자율화하여 제한을 폐지해야 함. 업종변경을 완전 자율화하여 승계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매 시각 탄생하는 현 환경을 고려할 때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 발목을 잡는 상태를 없애야 함
 -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업종변경 관련 제한이 없음
- 상속세 납부 후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해야 함
 - 환경변화 적응 및 기업 운영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 자산유지 의무를 완화해야 함. 7년간 80%·5년간 90% 유지를 처분자산 전부 가업관련 재투자 시 면제해야 함. 즉, 현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가업: 7년, 영농: 5년) 이내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하고 기업용 자산은 7년 이내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을 금지해 7년간 80%(5년간 90%) 상속받은 주식지분을 유지해야 함
 - 7년 동안 기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므로 수도권 공장부지 대금을 지방 공장부지 대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자산 가업관련 재투자 시에 자산유지 의무를 완화 또는 면제해 이를 인정해야 함.
 - 기업이 스스로 혁신여력을 마련할 자산 조정 여건 조성이 필요함

5-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한 및 조건완화

4) 사후요건: 업종 변경 자율화와 상속세 납부 후 사후관리 기준완화

- 기업승계 관련 대표 재직, 경영 기간 등 요건 완화는 사회적 책임, ESG 등과 이익 실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전문경영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표이사 재직 요건 삭제, 기업안정성을 담보한 가업승계 전·후 경영 기간 요건 축소 등이 필요
- 개별 기업별로 전문경영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표이사 재직요건 삭제, 가업승계 전·후의 무 경영기간 축소(피상속인 경영 10년 이상 → 5년이상, 상속인 경영 7년이상 → 5년이상)
 - 기업승계 前 최소경영기간 : 한국 10년, 독일 없음.
 - 기업승계 後 최소경영기간 : 한국 7년, 프랑스 3년, 이탈리아 . 독일 .
- 네덜란드. 일본 5년
- 피상속인의 상속 전 10년 이상 50% 이상 지분보유 의무 완화(피상속인 경영 10년이상 → 5년이상, 50% 이상 지분을 삭제)
 - 상속前 지분보유 기간 : 프랑스 2년이상(상장 20%이상), 영국 2년이상(상장 50%이상, 비상장 제한 없음), 아일랜드 2년이상(5%이상), 네덜란드 1년이상, 독일·폴란드는 지분보유 의무 없음.

5-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한 및 조건완화

4) 사후요건: 업종 변경 자율화와 상속세 납부 후 사후관리 기준완화

- 총급여액과 고용인원을 매년 80%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삭제
-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매 시각 탄생하는 현 환경을 고려할 때 총급여액과 고용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영 않고 매년 80% 이상 유지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혁신여력을 마련할 여건을 없애 발목을 잡는 상태를 지니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함
 -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기준총급여액) 평균의 80% 이상, 즉 매년 80% 이상 유지를 삭제
 -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기준고용인원) 평균의 80% 이상 유지, 즉 매년 80% 이상 유지를 삭제

5-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한 및 조건완화

5) 연부연납기간 연장

-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상속의 경우 분할 납부기간을 現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분할 납부기간을 現최대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미국, 독일, 영국은 일반 상속 시 분할 납부 기간이 최대 10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5년에 불과
 - 일본은 부동산의 경우 최대 20년, 동산의 경우 최대 10년으로 자산 유형별로 분할 납부 기간을 상이하하게 설정
- 연부연납기간도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확대해 기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 적용하는 제도 합리화가 요구됨
 - 현재 일반적인 경우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의 경우에도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창업세대 고령화 및 장수추세를 감안, 일반증여와 같이 대습증여 허용이 필요. 부모에 한정한 증여자 범위를 확대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포함해야 함

원활한 기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방안



VI. 결 론

VI. 결 론

-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기업상속세제 부문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미흡
- 기업승계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있으나 기업승계 없이는 지속가능한 회사가 존립할 수 없으므로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
- 중소기업의 후계자 선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기업승계를 기업의 '축적된 기술·노하우의 대물림'으로 볼 때 제3자 승계 등 승계 다각화의 필요성을 의미
-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6%를 고려하여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함
-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미래를 위한 기반 투자 촉진

VI. 결 론

-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현재 비상장법인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비상장법인 30%(상장법인 15%) 이상으로 낮춰야 함
- 총급여액과 고용인원을 매년 80%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삭제
- 연부연납기간도 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확대해 기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 적용하는 제도 합리화가 요구됨
- 상속세를 과세할 때 최근 납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함
-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공평 과세에 부합

감사합니다.